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80
----------	-------

발의연월일 : 2022. 1. 26.

발 의 자 : 조명희 · 김석기 · 성일종
이주환 · 이 영 · 안병길
이종배 · 홍문표 · 조경태
박대수 · 박성민 · 김도읍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에 차질이 생기는 등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비교적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를 소프트웨어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의 업무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의 개발·보급을 추가하고, 공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의 개발·보급

② 공사가 제1항제5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7조(업무) ①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교 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의 개발·보급 6.·7. (현행과 같음) 8. -----제4호 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 ----- ② 공사가 제1항제5호의2의 업 무를 수행하는 경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 은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7. (생 략)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 의2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u><신 설></u>	